

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인준의 건 - 1

○ 임금 협약 안 건 : 4 건

○ 단체 협약 안 건 : 4건

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인준의 건-1

□ 임금협약 (4건)

| 구분 | 연번 | 현 행 | 사 측 (안) | 노 측 (안) | 협의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|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|--|-------|-----|-----|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|
| 임금 협약 | 1번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금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적용 : 3.1% (2023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1.7% + 호봉승급분 1.4% 인상) ※ 통상임금 소송 관련 협의 포함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정합의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금인상분(3.1%)은 급식보조비 인상 ※ 급식보조비 인상액 : 72,000원/월 ※ 2023. 1월부터 소급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리후생규정 (별표1) 복리후생비지급기준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식보조비 : 전 직원 (지급액:월 100천원)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급식보조비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지방공무원 정액급식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지급액 조정(월 100,000원 ▶ 월 200,000원) ※ 근거 : 2022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정합의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족수당(자녀) 인상(자녀당 1만원) ※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(가족수당)제1항제3호에 의거, '23. 1월 부터 소급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3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수규정 제29조(가족수당)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6조(제수당 지급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첫째 자녀 : 월 2만원 둘째 자녀 : 월 6만원 셋째 자녀 : 1명당 월 10만원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족수당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가족수당 인상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당 초 금 액</th> <th>변 경 금 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첫째 자녀</td> <td>2만원</td> <td>3만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둘째 자녀</td> <td>6만원</td> <td>7만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셋째 이후 자녀</td> <td>10만원</td> <td>11만원</td> <td>1명당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소급적용 | 구 분 | 당 초 금 액 | 변 경 금 액 | 비고 | 첫째 자녀 | 2만원 | 3만원 | | 둘째 자녀 | 6만원 | 7만원 | | 셋째 이후 자녀 | 10만원 | 11만원 | 1명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정합의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자 업무대행이 다수일 경우에도 모든 대행자에게 마일리지 점수(4점) 부여 ※ 해당 팀에게는 별도의 가점(1점) 부여 - 인력채용 시 휴직자 사전조사 등을 통한 결과 반영 ⇒ 휴직예정자 조사결과 1년 이상 육아휴직자 1명 발생 예정으로 '24년 상반기 채용 시 반영 |
| | 구 분 | 당 초 금 액 | 변 경 금 액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첫째 자녀 | 2만원 | 3만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둘째 자녀 | 6만원 | 7만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셋째 이후 자녀 | 10만원 | 11만원 | 1명당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수규정 제25조의6(업무대행수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출산휴가자, 육아휴직자, 산재요양 중인 자(3개월 이상), 장기교육자 (6개월 이상), 병가자, 유산휴가자, 사산휴가자 (30일이상)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,000원 지급 다만,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업무대행 지정인원 수로 나누어 지급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자 업무대행수당 현실에 맞는 지급액으로 인상 -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 후 20만원 지급(인당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정합의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직자 업무대행이 다수일 경우에도 모든 대행자에게 마일리지 점수(4점) 부여 ※ 해당 팀에게는 별도의 가점(1점) 부여 - 인력채용 시 휴직자 사전조사 등을 통한 결과 반영 ⇒ 휴직예정자 조사결과 1년 이상 육아휴직자 1명 발생 예정으로 '24년 상반기 채용 시 반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□ **단체협약 (4건)**

| 구분 | 연번 | 현행 | 사측(안) | 노측(안) | 협약내용 |
|----------|----|--|--|--|---|
| 단체 협약 | 2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체협약 제48조(유급휴일) 공사 창립기념일 ○ 취업규정 제25조(휴일) 공사 창립기념일 - 유급휴일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체협약 제48조(유급휴일) 공사 창립기념일 취업규정 제25조(휴일) 공사 창립기념일 - 유급휴일 → 휴일 제외 또는 정상근무 ※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후속조치 사항임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결 / 현행 유지 |
| | 4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장기위탁교육 대상자 : 4명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교육 기회 확대 - 공사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보직의 순환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능률향상 도모 (4명→6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정합의 완료 - 장기교육 인원은 공사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며, 야간대학원 등을 활용한 고급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기회 확대 |
| | 5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사원 해외연수 대상자 - 20명 (1인당 2,300천원)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연수 지원금액 인상 - 현재 해외연수 지원금액이 장기간 인상되지 않고 실비금액과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지원금액 책정 인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잠정합의 완료 - '24년 예산액 인상(2,300천원→2,600천원) 단, 해외연수비 증액을 위해 노력 |
| | 6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리후생 정상화 관련 후속조치로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시 폐지함 ○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됨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검진 대상인원 본인의 추가 확대 적용 - 직장 건강검진 대상인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추가 적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회 완료(3차 본교섭 시 완료) - 단,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논의 |